

※ 본 자료는 2.7(화) 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2023. 2. 7

관 계 기 관 합 동

순 서

I . 추진배경	1
[참고 1] 국내 외환시장 구조	
II . 정책 여건 변화	3
[참고 2] 외환시장 전자거래 개념 및 현황	
III . 개선방안	5
1.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	
2. 개장시간 대폭 연장	
3. 선진수준 시장 인프라 구축	
4. 국내기관 역할 · 경쟁력 유지	
5. 거시건전성 제도 등 보완	
IV . 기대효과	12
[참고 3]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효과 예시	
V . 추진계획	14

I. 추진배경

◇ 국내 외환시장은 과거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폐쇄·제한적 시장구조를 20년 넘게 유지** (참고1)

□ **(현황)** 우리경제가 선진국 수준의 무역 규모¹⁾와 자본시장의 성숙도²⁾를 갖춰오는 동안, 외환시장 성장은 정체³⁾

- 1) 무역규모(수출입 합계, 억불): ('97)2,808 ('08)8,573 ('21)12,595 ('22)14,150
- 2) 주식 거래량(코스피+코스닥, 일평균, 억불): ('97)6.0 ('08)59.5 ('21)239.4 ('22)124.5
- 3)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은행간 시장, 일평균, 억불): ('97)18.3 ('08)78.1 ('21)85.4 ('22)90.4

○ 기술혁신 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글로벌 외환시장 및 역외 NDF¹⁾ 시장과의 격차도 크게 확대²⁾

- 1) Non-Deliverable Forward : 계약-만기 시점간 차액만 달러화로 결제하는 선물환
- 2) 日평균 거래규모(억불, 괄호는 전세계 비중 및 순위, 은행간 + 對고객, BIS):
[현물환] ('16)286 (1.7%/ 13위) ('19)303 (1.5%/ 16위) ('22)351 (1.7%/ 16위)
[NDF] 301 (23.1%/ 1위) 601 (23.3%/ 1위) 498 (19.5%/ 1위)

□ **(문제점)** 폐쇄·제한적 외환시장 구조가 환율안정성을 저해하고,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① 한 방향의 거래유인을 가진 일부 수급주체의 환율 영향력 확대

▪ 과거 선박수주 호황 시기에는 조선사¹⁾, 최근에는 해외투자를 확대 중인 개인·기관²⁾ 등이 외환시장에 큰 영향

- 1) 조선사 선박 수주액(억불): ('06)660 ('07)975 ('08)714 ('09)186 ('10)463
- 2) 해외투자(직접+증권, BOP 기준, 억불): ('14)678 ('18)1,073 ('21)1,392 ('22.1-11)986

▪ 역외 NDF 시장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며, 시장불안시 원화에 대한 투기적 경로*로 활용

* 원화 결제 불필요 + 24시간 거래 가능 + 高레버리지 → 투기거래 등에 용이

② 원화 접근성 부족이 원화표시 자산에 대한 매력을 저하시켜, 외국인 자금 유출¹⁾과 내국인 해외투자²⁾가 지속 확대

- 1)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수(조원): ('19)+1.6 ('20)△24.3 ('21)△24.9 ('22)△11.1
- 2) 내국인 해외주식 순매수(억불): +25.1 +197.3 +218.6 +118.9

③ 국내기관은 외환 관련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기 어렵고, 원화 비즈니스에 대한 강점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애로

[참고 1] 국내 외환시장 구조

□ **(외환시장 개념)** 주식 거래소와 같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라, 금융기관간 외환거래가 일어나는 장외 시장*

* 외환시장은 금융기관간 거래가 일어나는 은행간 시장(도매)을 지칭
 ≠ 개인·기업 등의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 거래는 對고객 거래(소매)로 구분

□ **(국내 외환시장 구조)** 원화는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
 → 국내 시장에서만 거래해야 하나, 시장참여·거래시간 등 제약

① **(역외거래)** 現 법령상 외국 금융기관간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 불가능 (→ 역외 원화시장 未형성)

▪ 환투기 방지 등을 위해 비거주자간 원화의 지급·수취 사유를 경상거래(수출입) 등으로 제한 [☞ 외국환거래규정]

* [선진국] 비거주자 지급·수취 제한 없음 → 국제화 → 글로벌 시장 형성

② **(국내시장 참여)** 국내 외환시장에는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 허용 + 거래 중개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만 가능 (외국환중개회사 인가제도)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 [선진국]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인가 제도가 없고, 외국환중개회사가 금융기관의 국적, 법적 자격에 관계없이 자율로 참여기관 결정

▪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으로만 거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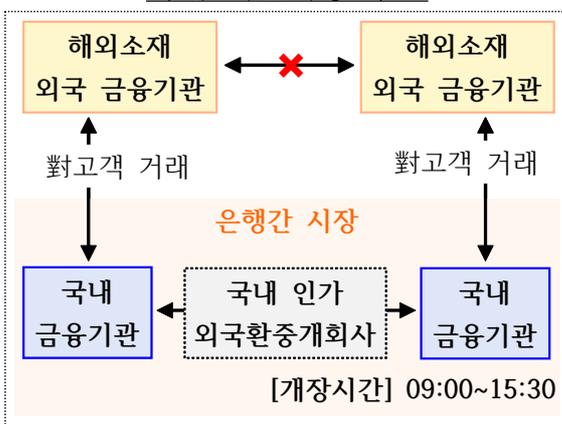
* 국내기관이 은행간 시장의 환율에 수수료, 마진 등을 붙인 가격으로 거래

③ **(거래시간)** 국내 외환시장은 韓시간 15시반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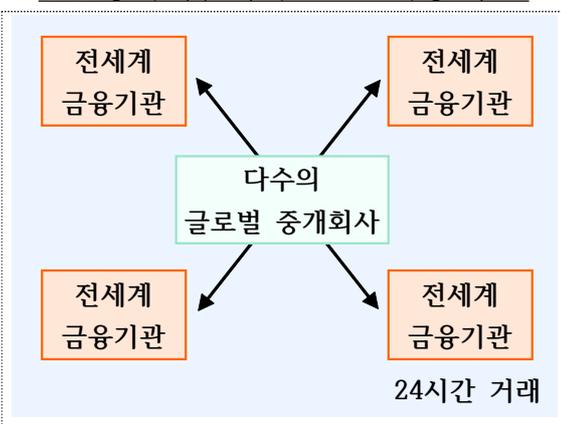
[☞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행동규범]

* [선진국] 외국환중개사들의 글로벌 서비스망을 통해 24시간 시장 형성

국내 외환시장 구조



선진통화 및 역외 NDF 시장 구조



Ⅱ. 정책 여건 변화

① (거시건전성 개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¹⁾와 위험 관리 노력 등으로 대외부문 취약성이 크게 완화²⁾

- 1) 선물환포지션('10.10월), 외환건전성부담금('11.8월), 외화LCR('17.1월) 등 도입
 2) 단기외채/보유액(기말, %): ('97)657.9 ('08)72.4 ('20)36.1 ('21)35.6 ('22.3/4)41.0
 순대외채권(기말, 억불) : △638 277 4,838 4,479 3,796

○ 외환보유액 지속 확충¹⁾, 다층적 외화유동성 공급망 마련²⁾ 등 외부충격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대응역량도 확보

- 1) 외환보유액(기말, 억불): ('97)204 ('08)2,012 ('20)4,431 ('21)4,631 ('22)4,232
 2) 환매조건부 방식 외화유동성 공급제도(20.9월),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비은행권 지원제도(21.1월), 美 연준과 상설 FIMA Repo Facility 이용 합의(21.12월) 등

② (대외안정성 자신감 확보) 강화된 거시건전성을 바탕으로, 팬데믹 당시 환율¹⁾, CDS프리미엄²⁾ 등 대외부문이 과거 위기대비 안정

- 1) 고점, 회복기간(1,200원 상회 후 복구): [금융위기]1570.3, 248일 / [팬데믹]1285.7, 73일
 2) 최대 변동폭(고점-저점, bp): [금융위기]645(47 → 692) / [팬데믹]37(20 → 57)

○ 작년 원달러 환율의 상승도 주요통화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과거 위기시 원화만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것과 차별화*

- * 최대 절상률(%) : [외환위기<'97.10.1일비>] (달러)+5.1 (유로)△4.1 (엔)△17.9 (원)△53.6
 [금융위기<'08.6.1일비>] +22.2 △19.8 +19.7 △34.9
 ['22년중<'21.12.31일비>] +19.3 △15.6 △23.4 △17.4

③ (기술적 여건 성숙) 과거에는 역외 외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허용* 외 대안이 없다는 점이 시장접근성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

- * 뉴욕, 런던 등 역외 외환시장에서 외국 금융기관간에 원화가 자유롭게 거래 되도록 허용되면 역외 원화시장 개설되는 결과
 ↳ 외환당국의 모니터링이 불가능 + 역외 환투기에 대한 시장안정 기능 제한

○ 다만, 최근 전자거래*의 보편화(참고2)로, 거래시간·참여자의 확대가 뒷받침될 경우, 역외 원화시장 개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비거주자의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 보장 가능

- * (과거) 사람간 수동 거래 ↔ (최근) 전자플랫폼으로 실시간 가격확인·주문·거래

○ 국내 외환시장에도 은행별 전자플랫폼 등 전자거래 인프라가 도입('21.12월)되며 기술적 기반이 마련

[참고 2] 외환시장 전자거래 개념 및 현황

① (개념) 가격제시(呼價), 주문 접수·매칭, 체결 등 거래의全过程이 전자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동 실행·완결

- 과거 전화·메신저를 이용한 사람간 수동거래(Voice 거래) 방식과 비교시, 거래시간·장소의 제약이 크게 완화

② (도입 요소) ①전자거래 인프라(API), ②對고객 전자플랫폼 필요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다른 소프트웨어간 데이터 교환 표준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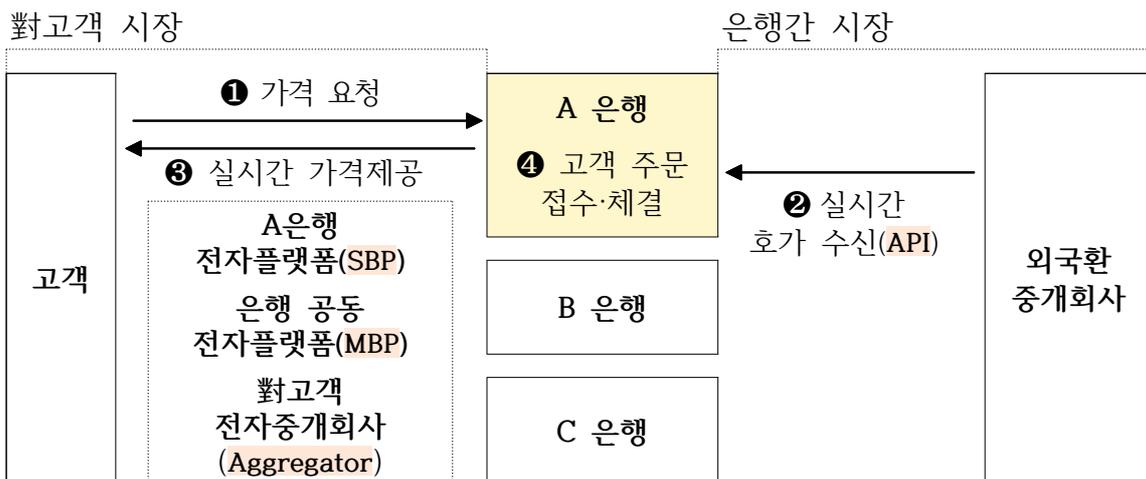
① (인프라) API를 통해 외국환중개회사 - 은행 - 對고객 전자플랫폼 등 분리된 시스템간 거래 정보를 실시간 교환 가능

② (플랫폼) 개별 플랫폼, 공동 플랫폼, 전자중개회사 등 구분

- (개별) 은행별 전자거래 플랫폼(SBP : Single-Bank Platform)
- (공동) 다수 은행이 전자거래 플랫폼을 공동 구축해 은행별 對고객 가격 제공, 주문·체결 완료(MBP : Multi-Bank Platform)
- (전자중개회사) 은행이 아닌 기관*이 다수 은행과 연결하여 은행들과 고객간 거래를 중개 (Aggregator)

* 글로벌 시장에서 FXall, FXGO, 360T, FX Connect 등이 서비스 제공 중

외환시장의 전자거래 흐름



③ (현황) 글로벌 시장에서는 전자거래가 이미 보편화*

* 전세계 외환거래 중 전자거래 비중(% , BIS): ('16)55.1 ('19)56.3 ('22)57.6

- 국내도 '21.12월 전자거래 인프라(API)를 도입하면서, 개별·공동 플랫폼은 은행의 고유한 외국환업무로서 가능
 - 다만, 전자중개회사(Aggregator)는 법령상 규율에 공백

Ⅲ. 개선방안

목 표

대외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며,
글로벌 수준으로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전 략

국내규제·감독체계에서 벗어난 역외 원화시장 개설 대신,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

세부 과제

3 大 정책 과제

국내 외환시장
대외 개방

- ✓ **인가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에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 **현물환은 물론, FX 스왑거래도 허용**
 -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 경우 의무화 (거래 모니터링)**

개장시간
대폭 연장

- ✓ **1단계로 韓시간 02시(런던장 마감시간)까지 연장**
- ✓ **추후 은행권 준비 등 여건을 보가며 24시간까지 확대**

선진수준
시장 인프라 구축

- ✓ **對고객 전자거래 활성화 + 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Aggregator) 도입**
- ✓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환전이 가능하도록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보 완 방안

국내 금융기관
역할·경쟁력 유지

- ✓ **본-지점간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사를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 허용 및 원화차입 신고의무 면제**
- ✓ **국내기관이 RFI의 신고·보고업무 대행 허용**
- ✓ **국내기관-RFI간 규제 적용 등의 차이 보완**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거시건전성
제도 등 보완

- ✓ **국내기관의 對RFI 선물환포지션 비율 별도 관리 검토**
- ✓ **유사시 RFI의 자본거래 직접 통제 방안 마련**
- ✓ **RFI 거래 등에 대한 실효적 감독체계 구축**

▶ 공론화, 법령 개정, 국내 금융기관 준비 등 거쳐 **이르면 '24.下 본격 시행**

◇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 (RFI*)에 대해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① (인가 대상) 현재 은행간 시장에 참여 가능한 외국환업무취급 기관¹⁾ 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²⁾ 등으로 제한

1)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은행, 증권, 투자매매·중개업

2) 국내 업권법상上記 범주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법인·지점

○上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는 불허

* (예) 외환전문투자회사(예 : PTF <Principal Trading Firm>)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중개업 등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참여 불가

② (인가 요건) 시장 활성화와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해 글로벌 관행에 부합하는 요건 부과

① (적정 유동성) 기존 참여기관과 정상적 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거래한도*(Credit Line) 확보

* (산정 방식 예시) RFI와 Credit Line을 개설한 기존 참여기관들의 거래량 / 전체 시장 거래량 ≥ 일정 수준

② (식별정보 확인) 인적사항 등과 관련된 법인정보(예 : LEI¹⁾), 국내 원화결제를 위한 계좌²⁾ 개설 여부 등

1) Legal Entity Identifier: 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 표준 ID ('11년 G20 도입)

2) 시장구조 개선방안 시행 이후에도 원화는 해외에서 결제될 수 없음 →

RFI는 원화결제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 원화결제용 계좌를 개설해야 함

③ (규제동등성 평가) RFI 본국 감독당국의 규제, 감독구조 등이 국내와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

❖ EU 규제 동등성 평가 사례

① (대상) EU 역내에서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국 소재의 투자업자

② (인가 요건) EU위원회의 해당 규제 동등성평가 결정¹⁾ 이후, 유럽증권시장 감독청(ESMA)이 제3국 감독당국과 협정²⁾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

1) 제3국의 규제·감독구조가 EU규제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

2) ESMA-본국 감독당국간 정보교환, 본국 법규 위반내역 통보, 현장검사 협조체계 등

④ (의무이행 협약) 법령상 의무 준수¹⁾ + 보고, 검사·감독, 자료 제출²⁾ 협조 + 심각·중대한 의무 위반시 인가 직권취소 등

1) 외국환거래법령상 시세조작·건전거래 훼손 금지, 신고·확인 의무 등

2) 통계·감독 목적의 거래관련 정보, 경영현황, 본국 규제준수 여부 등

③ (개방 범위) RFI에게 은행간 시장내 현물환·FX 스왑*거래 허용

* 현재 현물환율로 여유통화를 담보로 필요통화를 차입(교환)하고, 만기도래시 계약당시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1년이하 만기의 단기 외화자금거래

○ 시장참여자로서 RFI에 정상적 영업환경을 제공¹⁾ 하고, 해외 시간대 유동성을 확보²⁾ 하기 위해 FX 스왑시장도 개방

1) 글로벌 투자기관은 국내 투자시 현물환 외 환헤지를 위한 FX 스왑거래도 필요

2) '10년 이후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로 NDF 거래 비용 상승
→ 해외투자자들은 NDF시장보다 국내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를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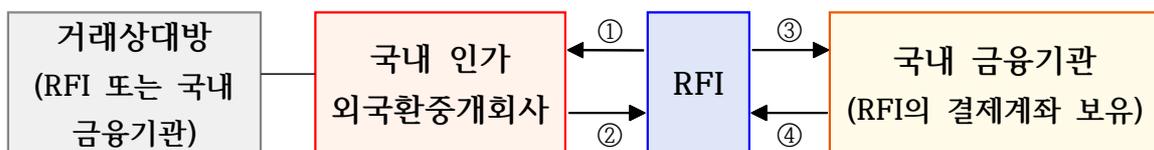
▪ 은행간 시장에 참여하는 RFI는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역내외 고객 모두와 현물환·FX 스왑거래 가능

○ 통화스왑(CRS), 통화옵션 등 기타 외환파생상품 개방 여부는 개선방안 시행 後 시장여건, 거래수요 등 감안하여 추후 판단

④ (거래 모니터링) RFI의 은행간 거래에 따른 원화결제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경우에만 허용*

* 외국 금융기관들이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중개회사를 통하거나 1:1로 직접 거래시, 당국의 모니터링 불가능 + 사실상 역외 원화시장이 개설되는 결과

❖ RFI의 은행간 시장 거래 및 결제 절차



① RFI가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현물환·FX 스왑거래

②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는 RFI에 **거래체결 내역서** 전송

③ RFI는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받은 **거래체결 내역서**를 확인하고, 결제계좌가 있는 국내은행에 **동 서류를 첨부해 결제 요청**

④ RFI로부터 결제 요청을 받은 국내은행은 거래체결 내역서상 총액과 RFI의 결제 요청 금액을 **비교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에만 결제 실행

2

개장시간 대폭 연장

【시장자율규제 사항】

◇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까지 대폭 연장(15:30 → 익일 02:00)**

1] (연장 범위) 국내 은행권의 준비, 인력운용 상황 등을 감안해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韓시간 02시까지 우선 연장**

○ 추후 은행권 준비, 시장 여건 등을 보가며 **24시간까지 확대**

❖ **개장시간 관련 해외투자자들이 제기한 불편 사항**

① (환전) 증시 마감 후 환전 규모가 확정되는데, **외환시장도 증시와 동시 마감**
→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시 **불리한 환율로 환전* 불가피**

* 외환시장 마감 후에는 은행이 포지션 정리(예 : 고객으로부터 매입한 달러를 은행간 시장에서 他은행에 매도)가 어려워, 고객인 해외투자자에게 더 높은 수수료 요구

② (벤치마크) 글로벌 투자기관은 통화별 보유자산 평가(Fixing)를 **런던 16시** (韓 01시) 환율로 계산하는데, 원/달러는 해당 시간에 **적용할 환율 없음***

* 실제 글로벌 투자기관은 우리시장 종가(15:30분)로 평가 → 다른 통화와 기준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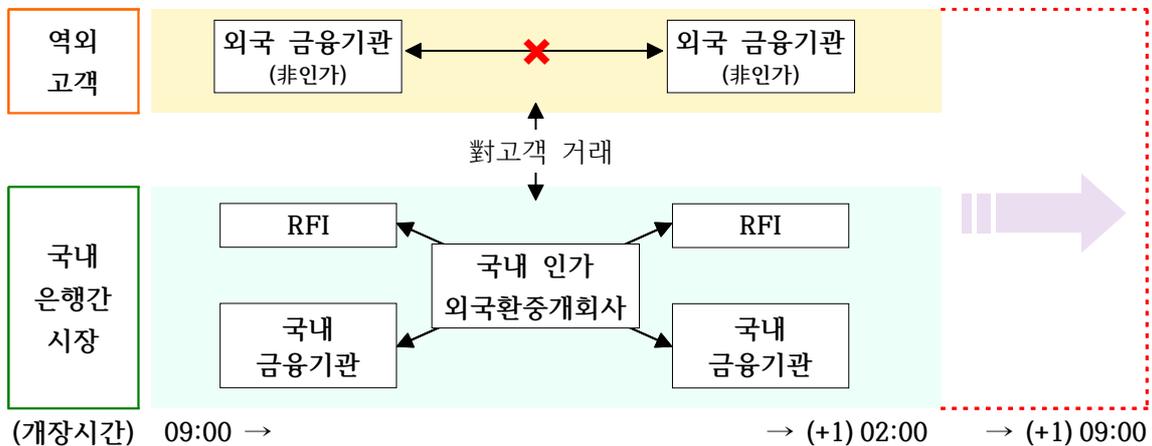
2] (벤치마크 환율) **매매기준율¹⁾은 현재와 같이 9시~15시반 기준 산출**, 여타 벤치마크 가격²⁾은 시장 자율협의를 거쳐 필요시 제공

1] 前거래일에 거래환율과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

↳ 법인 외화자산·부채 평가, 국외자산 양도차익 산정, NDF 차액정산 등 활용

2] (예) 15시반 체결가(現 종가), 02시 마지막 체결가, 전체 시장평균환율 등

❖ **외환시장 개방, 개장시간 연장시 국내 외환시장 구조 변화**



3 선진수준 시장 인프라 구축

◇ 글로벌 수준의 거래, 결제 등 관련 인프라 마련

1 (전자거래) 對고객 시장의 실시간 전자거래 고도화

- ① (인프라) 현재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API를 RFI에도 연결 가능
- ② (플랫폼) 글로벌 시장에 보편화된 '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Aggregator)'도 제도화를 통해 허용 **【외국환거래법 + 시행령·규정 개정】**

❖ 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 도입 방안

- ① (등록 의무) 당국에 '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로 사전 등록
→ 은행간 시장 참여기관은 등록된 기관을 통해 對고객 서비스 가능
- ② (제한) 은행간 시장 참여기관간 거래 중개는 불가, 이에 따라, 은행간 시장의 국내 외국환중개회사와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인 자동 스트리밍 (Non-Disclosed Streaming) 방식*은 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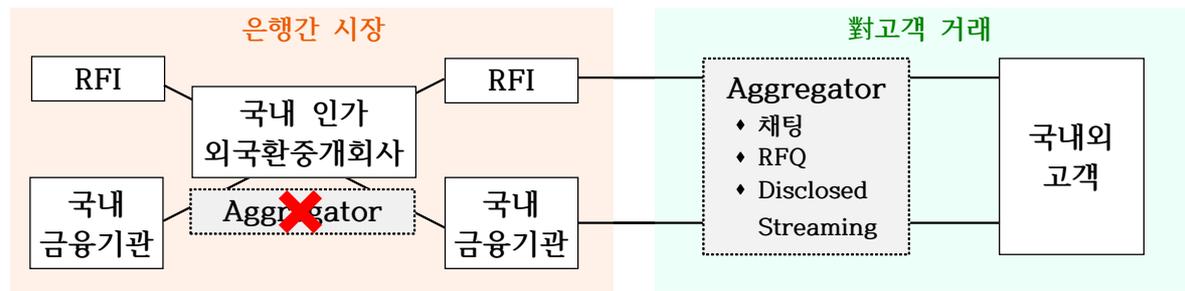
* 거래상대방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최적 가격에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

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회사의 서비스 제공 방식 및 허용 범위

허용	채팅	✓ 당사자간 메신저로 가격 확인, 주문, 거래체결
	RFQ (Request For Quotation)	✓ 고객 호가 요청 → 은행별로 고객에 호가제시 → 고객은 최적 가격의 은행 선택 → 거래 체결
	Disclosed Streaming	✓ 은행이 고객에 지속적 호가 제시 → 고객은 은행별 호가 확인 후 최적 가격의 은행 선택 → 거래 체결
불허	Non-Disclosed Streaming	✓ 은행이 고객에게 지속적 호가 제시 → 고객은 은행별 호가 확인 없이 최적 가격에 자동으로 거래 체결

- ③ (보고) 등록된 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회사가 당국에 거래내역 사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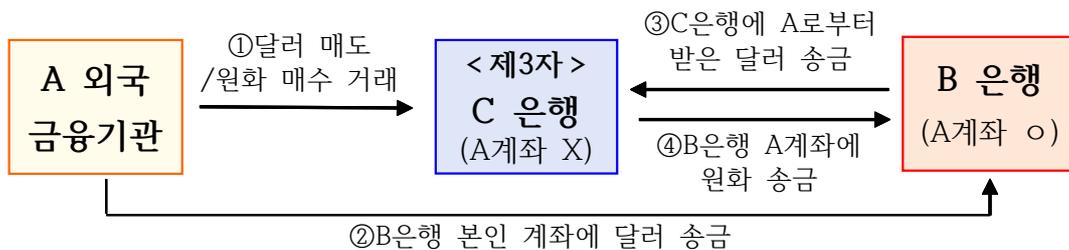
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 방안



② **(제3자 외환거래)** 외국 금융기관 등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 허용 ('22.12월 既 발표)

- 과거에는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 은행과만 외환매매가 가능해 해외투자자의 환전 불편* 등 발생
 - * 계좌 개설·관리 부담으로 외환거래의 상대방이 제한되면서 경쟁적 거래 불가
- 제3자 외환거래 허용 없이는, RFI가 모든 은행간 시장 참여 기관별로 결제계좌를 개설해야해 시장형성 자체가 불가능

❖ 제3자 외환거래 및 결제 절차 예시



③ **(동시결제¹)** RFI가 CLS 국내 결제대행은행² (現 9개 은행)에 결제계좌³ 개설시, 원화 관련 CLS 동시결제 서비스 이용 가능

- 1] 외환결제리스크 해소를 위해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BIS 권고로 '02년 도입)로, 국가간 시차 없이 통화별 차액만 결제
- 2] 한은금융망에 접속 가능한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 금융기관의 원화결제 대행
- 3] 실제 국내에서 증권·외환관련 영업중인 대다수 글로벌 금융기관이 동 계좌 보유

④ **(보고)** RFI가 한국은행이 운영중인 외환전산망을 통한 거래 내역 등 보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별도 보고시스템 마련

4 국내기관 역할 · 경쟁력 유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규정 개정】

◇ 국내 금융기관에 거래·행정 등 지원 및 규제 적용 등 차이 보완

① **(거래)** 본점-지점*간에는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를 허용하고, 원화차입 신고의무도 면제

* [범위] ①외은지점-동일그룹 RFI, ②국내본점-동일그룹 해외 법인·지점(RFI로 인가)

- RFI가 국내 외은지점·본점을 통해 영업 편의를 제고*하고, 원화 유동성도 용이하게 조달 가능

* RFI가 해외 시간대 거래 이후에는 남은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한 거래상대방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 → 직거래로 국내 외은지점·본점에 남은 포지션 이관 가능

② **(규제)** 국내기관과 RFI간 영업 및 거시건전성 규제 등에서의 차이는 시장 수요·여건 등을 보가며 필요시 개선*

* (예) <現> 국내본점의 해외법인 원화대출은 신고, 해외지점 원화대출은 신고면제
<改> RFI로 인가받은 해외법인의 경우, 국내본점의 원화대출 신고면제

③ **(행정)** RFI의 국내법령 준수 어려움을 감안하여, 동일그룹 內 국내 금융기관이 RFI의 신고·보고 업무* 대행 허용

*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환거래의 신고·확인 의무, 당국에 대한 보고 등

④ **(보완)** 국내지점이 없는 RFI에 대해서는 선도은행*에 신고·보고 등 업무위탁 허용, 선도은행으로부터 원화차입시 신고의무 면제

* 참여자 확대 등 시장구조 개선에 대비, 국내 기관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양방향 거래로 시장활성화에 기여한 은행(매년 6개¹⁾) 선정, 인센티브²⁾ 제공 ('22년 도입)
↳ 1) '23년 선도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JPM, Credit-Agricole
2) 양방향(매수+매도) 거래실적에 비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

5 거시건전성 제도 등 보완

【외국환거래법 + 시행령·규정 개정】

◇ RFI의 참여가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제도,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하고, **실효적 감독방안 마련**

① **(거시건전성)** 기존 국내기관 중심의 외환건전성 관리체계 보완

○ 예를 들어, 기존 선물환포지션 비율규제¹⁾와 별도로, 국내 금융기관의 RFI를 상대방으로 하는 對RFI 선물환포지션 비율을 별도로 산정·관리²⁾하는 방식 등 검토

1) 선물환純포지션 / 전월말 자기자본 ≤ (국내은행)50%, (외은지점)250%

2) 다만, 평시에는 모니터링에만 활용하며, RFI에 의한 시장불안 우려 발생 등 필요시 한시적으로 규제비율로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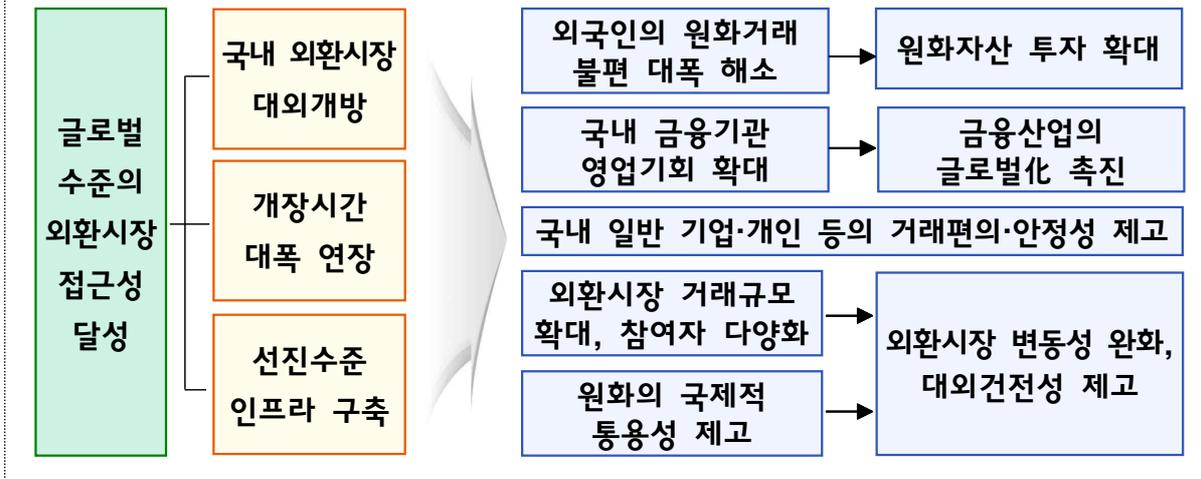
② **(컨틴전시)** 유사시 RFI 자본거래에 대한 직접통제 수단도 구체화

* 외국환거래법령에 자본거래 통제의 수단, 절차, 범위, 기간 등을 명확화

③ **(감독)** 현지 감독당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거래, 신고 등 의무위반시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직접 또는 위탁감사 등 실시

IV. 기대효과

❖ 외환시장 구조 개선 효과



- ① **(금융 선진화 촉진)** 글로벌 투자자의 외환시장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국내 자본시장·금융산업의 발전 촉진
 - 외국인의 원화거래 불편이 대폭 해소되면서 원화자산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영업 확대 등 글로벌화 견인
- ② **(외환거래 편의 제고)** 경쟁적 시장환경으로 서비스·비용구조 개선
 - 국내외 금융기관간 플랫폼·가격 경쟁 등을 유도해 외환거래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 제고
 -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기관뿐 아니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개인 등도 해외 영업시간에 자유롭게 환전 가능
- ③ **(시장변동성 완화)** 거래규모 증가, 다양한 거래동기를 지닌 시장 참가자의 확대로 시장안정에 기여*
 - * (예)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화매수 ↔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를 위한 외화매도
 - 특히,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역외 NDF거래 유인 감소
- ④ **(대외건전성 제고)** 원화의 국제적 통용성이 제고되며 중장기적으로 무역결제, 자본조달시 외화의존도 및 환리스크 완화 기대

[참고 3]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효과 예시

1 외국인 투자자

현 재	<p>① (거래시간) 다음날 국내 주식 매수를 계획 중이고, 美 CPI 결과 (韓시간 22:30)를 보고 바로 환전하고 싶으나, 우리 외환시장이 그 전에 마감(15시반)됨에 따라, 환전이 불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시간대 역외 외환시장에서 NDF를 거래하여 원화 매입 환율을 미리 확정하더라도,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원화 현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날 우리 외환시장이 개장(09시)한 이후 현물환 거래를 추가로 해야함 <p>② (상대방) 평소 선진국 투자시에는, 런던에 소재한 글로벌 은행과 주로 거래하는데, 원화는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과만 거래가 가능</p>
--------	---

개 선	<p>① (거래시간) 시간 제약 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화 환전이 가능</p> <p>② (상대방)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은행과도 거래 가능</p>
--------	--

2 국내 개인

현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시간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환전을 했으나, 외환시장이 마감되어 있어, 시장환율보다 높은 假환율로 1차 환전이 되고, 다음날 우리 외환시장 개장 이후에 실제 시장환율로 정산 받음 시장환율보다 높은 假환율로 환전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수량만큼 미국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고, 다음날 정산하여 입금된 차액을 다시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해서 불편
--------	--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시간에도 시장환율로 바로 환전이 가능해, 당초 계획대로 투자가 가능하며, 다음날 정산 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음
--------	---

3 국내 금융기관

현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는 시간·장소적으로 비거주자의 우리 외환시장 접근성이 낮아, 주로 국내 고객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 수익모델 창출에 한계
--------	--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 외환거래, 對고객 전자거래 등으로 비거주자인 역외 고객과의 접점이 넓어지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
--------	---

V. 추진 계획

◇ 법령 개정,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이르면 '24.7월 시행을 목표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추진**

- 시장구조 개선방안 시행에 따른 시장과 관련 업계에 혼란이 없도록 **시장참여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호흡을 맞춰가며 차질없이 준비**
- 준비 과정에서의 논의, 시행 시점의 시장 여건 등을 보가며, 필요시 **시행 시기와 구조 개선의 폭과 내용 등 조정**

① ('23년) ①외국환거래법 개정, ②국내 금융기관 준비, ③해외투자자 홍보 등 통해 본격 시행 준비

① RFI에 대한 법령상 규율 등을 정립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23.3/4분기 중 국회 제출

② 관계기관(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등), 업계 등이 참여하는 '외환 시장 구조 개선 추진 작업반' 구성·운영

▪ 국내 금융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지원하고, 국내 외환 시장에 전자거래시스템 확산 노력 강화

▪ 추가 구체화 필요 과제*는 작업반 논의를 통해 보완·확정

* (예) RFI 인가요건 상세 기준, 규제 역차별 해소, RFI 자본거래 통제 방안 등

③ 개별 면담, IR 계기 등 外 주식·채권시장 접근성 제고방안과 함께 '해외투자자 대상 범부처 합동 로드쇼' 추진 (2/4분기)

② ('24년)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의향 등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6개월여 시범운영을 거쳐 '24년 하반기 정식시행

○ 시범운영 기간 동안 외국 금융기관의 원화결제 및 거래내역 보고 프로세스, 당국의 모니터링·감독상 이슈 등을 점검·보완

* 시범운영 참여기관의 보고·결제 관련 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치유 허용